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전환)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)
- 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)
- 라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퇴출제도 합리화 관련 조문 정비)
- 마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감사의견 미달기업의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)
- 바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신설)
- 사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기업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)
- 아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개선)
- 자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운영제도 등 개선)
- 차.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(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구분하여 증거금 현금을 일반운용)
- 카.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(드롭 카피 도입)
- 타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상품군 및 상품군 내 기초자산 선정 방식 명시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22/12/7 개정 · 2022/12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한 상장폐지 결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 및 퇴출제도를 개선하고,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 심사 효율성 제고 및 관련 규정 명확화와 일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전환(제48조 제1항·제2항, 제58조 제1항, 제130조 제1항·제2항)
 -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,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
 - (상장폐지 사유)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% 이상,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
 -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) 자본전액잠식은 대상에서 제외(기존 유지)
 - 보통주권, 외국주권 등, 스펙(매출액 미달 제외), 리츠 공통적용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(제48조 제3항, 제130조 제3항, 제136조 제3항)
 -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
 - 사업보고서 미제출,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시 해당
 - 보통주권, 외국주권 등, 스팩, 리츠, 선박투자회사주권 공통 적용

-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가능한 요건 폐지(제47조 제1항, 제48조 제1항, 제50조 제2항, 제57조 제1항, 제58조 제1항, 제129조 제1항, 제130조 제1항, 제131조)
 - 추가미달(액면가의 20% 미만)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에서 삭제
 - 보통주권, 외국주권 등, 스팩, 리츠 공통적용

- 의무보유 인출시 잔여기간 의무보유 근거 명확화(제159조)
 - 의무보유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처분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
 -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 받은 자는 세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함

- 관리종목지정사유 명확화(제47조 제1항·제2항, 제128조 제1항, 제135조 제1항)
 - 형식상장폐지사유 발생시 기타 사유로 관리종목지정을 하였던 것을 형식상장폐지사유로 관리종목지정을 하도록 명확화
 - 보통주권, 외국주권 등, 스팩, 리츠, 선박투자회사주권 공통적용

- 매출액 인정 기준 합리화 및 인용조문 정비(제19조 제1항, 제46조 제1항, 제72조 제1항, 제124조 제5항)
 -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매출액 정의 변경
 - 보통주권, 외국주권 등, 리츠 공통적용

- 상장지수펀드증권(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포함) 상장예비심사 절차 관련 규정 정비(제112조, 제118조)
 - 기존 상장심사를 상장예비심사로 자구 수정하고, 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 기한 등을 추가
 -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며,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 시 상장예비심사를 종료
 -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

- 상장지수펀드증권(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포함) 신규상장 절차 관련 규정 정비(제113조, 제119조)

- 신규상장신청인의 신규상장 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신규상장심사 결과 통지 기한 등을 추가하고 기존 신규상장 심사요건 등 조문을 정비
 -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며, 거래소 승인 시 제출기한 연장 가능
 -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일부부터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
- 주식워런트증권·상장지수증권 상장심사 관련 규정체계 정비(제139조, 제140조, 제141조, 제149조의2, 제149조의3, 제149조의4)
 - 주식워런트증권·상장지수증권 상장예비심사 관련 심사요건 및 상장지수증권 심사철회 절차를 규정에 명시하여 상장예비심사에 대한 근거 명확화
 - 주식워런트증권·상장지수증권의 질적 심사요건을 상장지수펀드 증권과 동일하게 규정에도 명시하여 질적 심사에 대한 근거 명확화
 - 주식워런트증권·상장지수증권은 세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적 심사 진행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2022/12/7 · 2023/1/2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 등 선진시장 수준의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장치를 제공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알고리즘거래 관련 용어 의미 명확화(제2조)
 - ‘알고리즘거래’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
 - ‘고속 알고리즘거래’ 및 ‘고속 알고리즘거래자’ 정의 규정 신설
 - (고속 알고리즘거래) ① 회원전산센터,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에 위탁자 소유 또는 직접 통제하는 매매 주문시스템을 이용한 알고리즘거래 또는 ② 회원이 자기매매로 하는 알고리즘거래
 - (고속 알고리즘거래자)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
-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관하여 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 및 회원의 수탁 거부사유 등 추가(제78조, 제84조)
 -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와 회원 사이의 약관 필수 기재 사항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

- 회원의 수탁거부 사유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및 등록요건 불충족 발견 등 거래자 관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

□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 도입(제104조의3)

-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거래소에 대한 등록의무 및 그 요건, 위탁자에 대한 회원의 수탁 중단 및 거래소의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
 - (등록요건)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및 적정성, 전문성 등
-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규정
-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행 계좌의 신고 의무 및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고속 알고리즘거래호가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

□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마련(제104조의4)

-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관하여 회원에게 전산시스템 점검 의무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,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

□ 접속해제시 호가취소제도의 도입(제13조의2)

-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회원과 거래소 간 시스템 연결이 해제되는 비상 상황의 경우 모든 호가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기능(COD: Cancel On Disconnect)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위험관리장치로 제공

□ 일반 알고리즘거래 관련 내용 정비(제2조 및 제104조의2)

- 알고리즘거래의 정의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여 규정상 괴리를 해소
 - 채무증권의 경우 알고리즘거래 계좌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대상에서만 제외하고 있음

3) 관련 규정

□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(2022/12/7 개정 · 2023/1/25 시행)

- 제2조, 제16조의2, 제34조 및 제40조, 제50조의3, 제50조의4

□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(2022/12/7 개정 · 2023/1/25 시행)

- 제2조, 제21조의2, 제52조 및 제59조, 제70조의3, 제70조의2 및 제70조의4
- 호가 일괄취소(Kill Switch) 제도 도입(제70조의2 제3항)
 - 일반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 발생시 회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계좌의 미체결호가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

□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(2022/12/7 · 2023/1/25 시행)

- 제2조, 제111조, 제124조, 제156조의3, 제156조의4, 제156조의2, 제156조의5, 제156조의6

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2022/12/7 개정 · 2022/12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기 위함

- 금융위원회 「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(2022. 9. 30)」 후속조치로 추진

2) 주요 내용

-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(제54조 제1항, 제55조 제1항, 제56조 제1항)

-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,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

- (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)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% 이상,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,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, 2회 연속 자기자본 50% 초과 세전 손실 발생
- 자본전액잠식은 대상에서 제외(기존 유지)

-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(제55조 제1항)

-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

- 사업보고서 미제출,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, 2년간 정기보고서 3회 미제출

-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가능한 요건 폐지(제52조 제1항, 제53조 제1항, 제56조 제1항)

-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5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

-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

-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· 감사의견 비적정 발생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

-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대비 상장법인 부담이 높은 상장관리 제도 개선(제52조 제1항, 제53조 제1항, 제54조 제1항 · 제2항, 제55조 제2항)

-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종전의 반기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
 -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 단위 자본잠식, 자기자본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
-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 제외(제53조 제1항, 제56조 제1항)
 -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실질심사
 -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세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외부감사인 확인서를 제출
- 의무보유 예외 사유 정비(제16조 제1항)
 -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
- 매출액 인정 기준 합리화 및 인용조문 정비(제15조 제6항, 제22조 제1항, 제28조 제1항, 제50조 제1항, 제66조 제1항, 제67조 제1항, 제68조 제1항, 제72조 제1항, 제73조 제1항)
 -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매출액 정의 변경 등

라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2022/12/7 개정 · 2022/12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'기업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'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」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퇴출제도 합리화 관련 매매거래정지 항목 삭제(제37조 제2항 등)
 - 풍문 등 관련 매매거래 정지항목 중 반기 검토(감사)보고서상 요건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고 기존 조문 정비
- 퇴출제도 합리화 관련 인용조문 정비(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 (3) 등)
 - '감사보고서 제출' 및 '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사유 발생' 공시 중 삭제 퇴출요건 관련 인용조문 정비

- 매출액 미달 판단기준 개정(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 (1) (다))
 - 관리종목 지정 관련 매출액 미달 판단 시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재무제표상 매출액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개정 상장규정과 합치하도록 정비
- 공시의무대상 명확화(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 (2) (가))
 - 반기보고서상 검토(감사)의견 비적정에 한정하여 공시하도록 공시 의무대상을 명확화

마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12/9 개정 · 2022/12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한 상장폐지 결정을 통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,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퇴출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지수펀드증권 등의 상장심사 효율성 제고 및 규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감사의견 미달기업의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(제19조, 제48조, 제50조)
 -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견 미달 사유의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 합리화
-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관리 가능한 요건 폐지(제45조, 제48조, 제105조, 제106조, 별표 7)
 - 추가미달(액면가의 20% 미만) 요건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- 의무보유 제도 합리화(제21조, 제129조)
 - 상장신청인이 물적분할 법인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주주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 면제근거 마련 등
- 상장지수펀드증권(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포함)의 상장예비심사 및 신규상장 신청 관련 절차 정비(제4조의2, 제91조, 제91조의2, 제97조, 별표 1)
 - 상장지수펀드증권(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)의 신규상장 신청 전 상장심사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 상장예비심사 및 신규상장 신청서와 각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비
-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질적심사 내실화 등(별표 2의2)
 - ESG 심사기준을 경영투명성 항목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상장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

- 신규상장기업의 이행실태 점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(제4조의3)

바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12/22 개정 · 2023/1/2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알고리즘거래에 관한 종합관리체계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제를 도입한 업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,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단일가매매 호가범위 확장 폐지, 호가가격 구분 단위 변경, 동시호가 우선순위 조정 등 매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가) 고속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제도 정비

-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 신설(제104조의3)
 - 회원의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협력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, 전산시스템 등 개발·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, 장애 등 발생 시 통제·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, 상호 연락체계 유지 및 수탁중단 시 통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
-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(제131조부터 제131조의3까지)
 -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요건 및 등록·신고방법, 거래자 등록번호 발급 및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 방법 등 신설
 - (등록요건)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(내부통제조직과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등)를 갖출 것 등
 -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 중단 사유 및 거래소의 거래자 등록 말소 사유 명시
 - (수탁중단 사유) 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 등에서 주문시스템을 반출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경우
 - 거래소 내 다른 시장을 통해 등록하거나, 관계회사로 거래자의 매매 주문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등록에 관한 특례 신설
 - 다른 회원을 통해 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수탁을 받으려는 회원에 대하여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한 사용권한 신청 및 신청 방법 규정
-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신설(제131조의4)
 - 위탁자의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전·정기적 점검의무 및 주문한도 부여·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장치 구축 의무 부과
 -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자료, 점검·감독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10년간 기록보관 및 거래소 요구 시 제출 의무 부과

- 고속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장치 마련(제13조의2, 제17조의2, 제17조의3, 제41조의2, 제108조 및 별지 제2호의6)
 - 거래주체가 동일한 호가간 체결 가능 시 부여 조건에 따라 호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보는 자전거래방지제도(SMP)를 신설하고,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규정
 - (SMP, Self Match Prevention)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(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가 결합된 번호)가 동일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로부터 제출된 호가간의 매매체결을 사전에 방지

[자전거래방지제도의 발동요건 및 효과]

발동요건	자전거래방지조건	효과
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입력 시 다음 4가지 중 하나의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	0: 자전거래방지제외	자전거래방지제도 적용 제외
	1: 기존호가취소	먼저 제출한 호가 전량 취소
	2: 신규호가취소	나중에 제출한 호가 전량 취소
	3: 양방향호가취소	자전거래가 발생가능한 수량만큼 매도·매수호가 양방향에서 취소

- 위험관리 목적에 한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가 사용가능한 일괄호가 취소를 신설하고 그 절차 및 회원의 관련 자료 보관의무를 규정
 - MOC(Mass Order Cancellation): 대량의 호가를 일괄하여 취소하는 기능
- 접속해제 호가취소제도(COD)의 발동 요건, 대상 및 호가의 범위, 신청방법 등 마련
 - COD(Cancel On Disconnect): 전산오류 등 사유로 회원과 거래소간 시스템 연결이 해제되는 비상 상황 시 모든 호가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기능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및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에 한정되지 아니함

- 고속 알고리즘 관련 호가 입력 사항 추가(제12조, 제12조의2, 제14조)

나)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매매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

- 호가가격 단위를 구분하는 가격대 개선(제32조)

- 1천원, 1만원, 10만원의 호가가격 단위를 구분하는 가격대를 2천원, 2만원, 20만원으로 변경
 -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증권, 상장지수증권,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존 유지

가격대		단위
기존	개정	
~1천원	~2천원	1원
1천원~5천원	2천원~5천원	5원
5천원~1만원	5천원~2만원	10원
1만원~5만원	2만원~5만원	50원
5만원~10만원	5만원~20만원	100원
10만원~50만원	20만원~50만원	500원
50만원~	50만원~	1,000원

- 동시호가의 우선순위 관련 수량배분 단계 축소(제34조)
 - 동시호가 수량배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, 일부 증권을 제외한 주권 등에 있어 위탁자 우선의 원칙 폐지
 -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위탁자 우선의 원칙 유지

[동시호가 수량배분 단계 축소]

기존 6단계	개정 3단계
매매수량단위의 100배	매매수량단위의 100배
매매수량단위의 500배	
매매수량단위의 1,000배	
매매수량단위의 2,000배	
잔량의 2분의 1	잔량의 2분의 1
잔량	잔량

- 소액채권 시가 동시호가 체결 우선순위 조정 등(제67조)
 - (매수) 동일가격에서의 위탁매매호가 우선원칙 폐지에 따라 매수호가간 우선순위를 정비
 - (기존) ①위탁 > ②자기(전담회원) > ③자기(비전담회원)
 - (개정) ①위탁 = ①자기(전담회원) > ②자기(비전담회원)
 - (매도) 동일가격에서의 매도대행사의 반대매도호가 우선원칙을 신설
 - 발행물량의 미매각 방지 및 안정적 유통을 위하여 반대매도호가(자기)를 타 호가에 우선
 - (매도대행사) 규정 제95조 제1항에 따라 매출대행기관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
 - (반대매도호가) 세칙 제76조 제5항에 따라 매도대행사가 익일에 장개시 전 제출하는 매도호가
 - (기존) ①위탁 > ②자기(반대매도) = ②자기(기타매도)
 - (개정) ①자기(반대매도) > ②위탁 = ②자기(기타매도)
 - 현재 종가 결정시 매도대행사 매도호가 우선(세칙 제75조 제2항 제1호)
-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참여 호가 범위 확장제도 폐지(제31조의5, 제35조, 제37조 및 제55조)
 - 가격발견 효과가 미미한 현행 단일가매매 참여 호가 범위 확장을 폐지하고, 단일가매매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
 - 규정 제23조의 가격을 단일가호가 시간에 접수된 호가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 호가범위를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로 확장하는 제도

- 장중대량매매 및 시간외대량매매 방법 추가(제49조 및 제52조)
 - 기존 대량매매등네트워크(k-blox)외 회원증권단말기 등을 통하여 호가하는 방법을 추가

다) 기타 제도 개편 사항

□ 유동성공급회원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 정비(제131조의3)

-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회원과 거래소간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추가

□ 시장조성자 평가 제외 요청 사유 추가(제31조의20)

- 시장조성자 평가 제외 요청이 가능한 시장조성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에 '시장상황급변'을 명시하여 구체적 사유 추가

□ 착오매매의 정정 관련 회원 범위 개선(제44조)

- 단순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외 계열사 등의 착오의 경우 회원의 착오로 보아 착오매매 정정 처리 허용

3) 관련 규정

□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12/21 개정 · 2023/1/25 시행)

- 제38조의2,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6까지, 업무서식 24 및 업무서식 25, 제52조의7, 제18조의3, 제18조의4, 제18조의5 및 별표 1의3, 제7조, 제8조 및 제8조의3, 제18조, 제12조의5, 제20조, 제21조, 제27조, 제22조의2 및 제24조, 제12조의18, 제32조

□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12/22 개정 · 2023/1/25 시행)

- 제65조의2, 제82조의4, 제82조의5, 제82조의6, 업무서식 18 및 업무서식 19, 제82조의7, 제11조의2, 제12조의2, 제12조의3 및 별표 1의2, 제82조의2, 제82조의3 및 업무서식 17, 제7조, 제9조 및 제10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 및 제36조, 제33조 및 제34조의2, 제22조, 제41조, 제38조

□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12/21 개정 · 2023/1/25 시행)

- 제114조의8, 제114조의5, 제114조의6부터 제164조의8,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, 제165조의9, 제164조의10, 제54조의2, 별표 6의2, 제48조, 제50조, 제53조의2, 제164조의3, 제47조, 제60조의3, 제63조, 제64조, 제79조, 제83조, 제152조, 제10조의2

사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12/9 개정 · 2022/12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」상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세칙을 정비하고자 함
 - 금융위원회 '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(2022. 9. 30)' 후속조치로 추진

2) 주요 내용

- 기업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
 - 영업손실 및 반기 기준 자본잠식 등 발생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· 해제시기 등 적용 방법 규정(제48조, 별표 9, 별표 10)
 -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(제49조, 제61조, 별지 제42호)
 - 별지 제43호 서식의 확인서로 확인되는 평가손실
 - 금융위 '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(2022. 10. 6) 후속조치
 -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전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적용방법 등 정비(제59조, 제61조)
 -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병합하여 절차 진행(제60조)
 - 또한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생략
 -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(제61조의2)
- 의무보유 예외 사유 신설(제17조, 제23조)
 -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
 - 금융위 '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인 제고방안(2022.9.5.) 후속조치
- 합병상장 신청 서류 정비(별표 2의2)
 - 스펙 합병 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실무를 반영하여 스펙 소멸 방식 합병상장 신청서류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확인서 삭제

아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12/9 개정 · 2022/12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투자자 보호 실효성은 낮고 기업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일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여 상장법인의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
 - 금융위원회 '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(2022.9.30.)' 후속조치로 추진

2) 주요 내용
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개선(제24조의4)
 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현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사유를 실질심사 심의대상에서 제외 가능
- 형식적 상장폐지 기업 이의신청 제도 개선(제27조)
 -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되는 경우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
 -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다른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이의신청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

자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12/5 개정 · 2022/12/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장외파생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포지션 등의 효율적 처분을 위한 경매제도 개선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운영제도 등 개선
 - 정상위탁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사무대행 관련 해지의 의사표시 기간 규정이 결제불이행 시에는 예외임을 명정
 -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자문범위를 벗어난 사무대행기간 결정 권한 폐지
 -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간사를 거래소 조직구조에 맞게 변경
 -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

□ 최저가격 제도 신설

- 경매 시 과도한 손실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낙찰 하한의 기준으로 최저가격 제도 도입

□ 경매 호가부호 변경

- 경매단위 가치와 역방향으로 규정된 호가부호를 정방향으로 변경

차.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(2022/12/16 개정 · 2022/12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에 대한 일반운용시 위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위탁재산 및 자기재산 간 분리 운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 - 특별운용 금액의 경우 회원의 위탁재산 및 자기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 기 마련(2021.12.27. 지침 제758호)

2) 주요 내용

- (일반운용 금액)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증거금 현금을 일반운용(제5조 제1항)
- (일반운용 방법)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의 구분 표기에 대한 내용을 경쟁입찰 예치조건에 추가(제6조 제2항)

카.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(2022/12/28 개정 · 2023/1/2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위험관리를 재고하기 위하여 주문·체결에 관한 정보를 기존 주문·체결 세션과 분리된 별도의 세션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드롭 카피를 도입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드롭 카피 도입(제2조, 제8조의2, 제12조)
 - 드롭 카피 정의 규정 신설
 - 드롭 카피(Drop Copy): 세션과 구분되는 별도의 논리적 회선을 통해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 체결내용 등을 회원에게 송신하는 서비스

— 드롭 카피 신청 방법 및 회선 개수 등 운영 방법을 신설하고, 세션 운영기준의 필수 포함사항을 추가

□ 회원의 전산센터 설치 개수 제한 규정 삭제(제4조)

□ 접속해제 호가취소 및 적용해제 신청 방법 신설(제8조)

— 접속해제 호가취소(COD: Cancel on Disconnect) 또는 그 적용해제 시 신청방법 추가

타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2022/12/29 개정·2022/12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상품군 및 상품군 내 기초자산 선정 방식 명시(제17조, 별표 4)

— 기초자산의 유형과 GICS 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증거금 감면을 적용할 상품군을 구성하고, 기초자산간 동일방향 확률을 고려하여 상품군에 속하는 기초자산을 선정

□ 상품군 가격상관율 및 기초자산별 상대적 규모 비율 산정 방식 명시(제18조, 제19조, 별표 4)

— 상품군 내 기초자산간 가격상관율 중 최솟값을 5% 단위로 절사하여 상품군의 가격상관율을 산정

— 상품군 내 선물상품의 평균계약 가치가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, 기초 자산별 선물상품의 평균계약가치 비율로 상대적 규모비율을 산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